

# 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임수민\*\*

<차례> \_\_\_\_\_

I. 머리말	IV. 전자적 수단 도입 방식
II. 프랑스 보험법제 개관	V.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해지권
III. 전자문서규정을 통해 살펴본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방식	VI. 장기기증자 차별금지
	VII. 결 론

---

주제어 : 프랑스 보험법, 보험계약해지권,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전자문서, 장기기증자 보험

<국문초록> 최근 해외 주요국의 보험법 개정의 초점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법을 제대로 설계하고 개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법 제4편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법의 정비에 도움을 주고자, 프랑스 보험법 전 중 제1권 보험계약편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보험법의 주요 개정사항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보험자에게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보험계약자가 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 연례 해지권과 중복보험 해지권을 정비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 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장기기증자 뿐 아니라 세포(또는 생식세포)기증자도 보호하는 법 개정을 한 차례 더 하였다는 점이다. 또, 보험법 자체에 임의규정인 조문과 강행규정인 조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 개정 인해서 신설되는 법조항마다 그 임의규정성과 강행규정성을 판별하여 그 성격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선진적인 보험 법제를 오랜 기간 운용해 온 역사를 가진 대륙법계 국가로서, 보험법규가 매우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 보험법 연구는 향후 우리의 보험 법제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논문은 「임수민 외 2인, 최근 해외 보험법 개정 동향, (사)한국법학원, 2018, 1-109면」 중에서 제 4장 프랑스임수민 단독집필 부분을 정리·발전시킨 것이다.

\*\* 한국방송통신대 상법 강사, 법학박사 (Ph.D. in Law)

- 논문접수일(2020.09.27), 심사개시일(2020.10.14), 게재확정일(2020.10.29)

## I. 머리말

우리 상법(제4편 보험편)은 1962년 제정된 이래로 몇 차례 중요한 개정을 거쳤으며,<sup>1)</sup> 지난 제20대 국회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고지의무의 수동화, 생명·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약관 허용, 특별위험 감소 시 보험금 감액 청구 허용 등에 관한 것이다.<sup>2)</sup>

대부분의 사보험계약은 영리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영리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을 이용해서 보험소비자가 구매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따라서 정보와 경제력, 협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보험계약자, 즉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요구된다.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법을 제대로 설계하고 개정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법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법의 정비에 도움을 주고자, 프랑스 보험법전 중 제1권 보험계약편의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 II. 프랑스 보험법제 개관

### 1. 연구의 필요성

프랑스는 유럽 2위의 보험시장을 가진 국가일 뿐 아니라<sup>3)</sup> 일찍이 보험법제를

---

1) 우리 상법(제4편 보험)은 1962년에 제정·공포되어 1963년 시행된 이후, 1991년에 대폭 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그 후 한국의 보험산업 규모가 세계 7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법무부)는 보험법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7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여 200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였다(의안번호 제550호). 그러나 이 개정안(정부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방해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 등의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2014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기초로 제안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당시 입법화되지 못한 고지의무의 수동화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전자문서를 명문으로 허용하지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다. 2017년에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명문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있었다.

2) 상세한 사항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미련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험계약법리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1930년에 보험계약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76년에 이르러 보험에 관한 단행법인 보험법전을 제정하였다. 보험계약법제는 보험법 제1권에 편입되어 있다. 국내에서 보험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프랑스는 성문법계 국가라는 점에서 영미법계 국가에 비해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 국가로서 보다 적합하다. 특히, 현행 프랑스 보험법전 제1권(보험계약법)은 우리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에 비해 규정의 수가 많고 각 조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우리법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혁

프랑스 보험법제는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 및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영향을 받는다. 법 개정 역시 유럽연합지침의 개정에 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보험법전 뿐 아니라 민법전도 적용되는데, 프랑스 민법전에서는 보험계약을 사행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1964조). 보험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보험법이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다.

프랑스 보험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681년 해사조례가 보험법, 특히 해상보험법의 시초이며, 1807년 제정된 상법전에 1681년 해사조례의 해상보험규정이 거의 그대로 편입되었다. 1930년에 보험계약법(*la loi du 13 juillet 1930 sur le contrat d'assurance terrestre*)<sup>4)</sup>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전은 육상보험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 법전은 각 강행규정인 조문과 임의규정인 조문을 적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sup>5)</sup> 상법 보험편 규정을 원칙적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3) OECD Data, National insurance market share, <<https://data.oecd.org/insurance/national-insurance-market-share.htm>>, 2016; FFA(French Federation of Insurance)에 따르면 프랑스는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고, 유럽 보험시장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큰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Standard & Poor's에 따르면 프랑스 재보험사인 SCOR은 재보험료 규모가 138억 유로로 세계 5위 규모이다.

4) JO, 18 et 19 juillet 1930.

5) 1930년 프랑스 보험계약법 제2조에서는 '동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고 83개 조문 중에서 22개 조문만 임의규정'이라고 명시하였다.

보는 조항(상법 제663조)을 두고 있는 우리법제와 차이가 있다.

한편, 보험업감독법은 1905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76년에 보험계약법과 보험업감독법을 통합한 보험법(le code des assurances)이 제정되었다. 1976년 7월 16일자 장관명령(arrêté du 16 juillet 1976)에 의해 제정된 이 1976년 보험법은 법령과 시행령을 포함하여 1326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법이 부분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법전(le code des assurances)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률부분(Partie législative), 시행령부분(Partie réglementaire), 부령부분(Partie réglementaire-Arrêtés)으로 3분되어 있으며, 이 중에 법률부분은 제1권 보험계약, 제2권 의무보험, 제3권 보험기업, 제4권 보험의 특별한 구성과 법제, 제5권 보험중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이 우리나라의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에 해당한다. 제2권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무역보험법 등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6)</sup>

### 3.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비롯한 최근 개정 동향

Bérégovoy법(1989년 12월 31일 법률 89-1014호)은 프랑스 보험계약법을 유럽 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6개장 6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이며, 구체적으로는 권리보호보험(서비스공급의 자유 및 소송비용보험)에 관한 EU지침에 프랑스법을 부합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보험계약법 현대화의 구체적인 목표는 소비자보호 강화이다.

보험계약법의 현대화 작업 이후에도, EU지침에 의해 보험법전 및 관련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다. 최근의 주요 개정으로는, ① 보험상품 판매 지침(2016년 1월 20일){Directive sur la distribution d'assurances (20 janvier 2016)}, ②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26일){La loi de modernisation du système de santé (26 janvier 2016)}, ③ 소비자법과 민법 개정(Les recodifications du Code de la consommation et du Code Civil), ④ 소비자 분쟁에 대한 법정 외 분쟁해결 규정 (2015년 8월 20일자 명령){Dispositions relatives au règlement extrajudiciaire des litiges de consommation (ordonnance du 20 août 2015)}, ⑤ 다

6) 정진세/김성태(역), 「프랑스 보험계약법」, 법무부, 2016, 일러두기.

각화 조항의 구성을 초래하는 약속에 대한 새로운 발전 (2016년 7월 13일 법령과 두 가지 법령의 결과){De nouveaux développements sur les engagements donnant lieu à la constitution d'une provision de diversification (issus du décret et des deux arrêtés du 13 juillet 2016)}이 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배경에는 새로운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의 도입,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보험 영역에 도입할 필요성,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 소비자의 개인정보(특히, 병력 등 건강상태에 관한 민감한 정보) 침해 방지 필요성,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 필요성, 프랑스 민법 개정의 직·간접적 영향 등이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보험법전 제1권 보험계약법에 대한 최근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우리법상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Ⅲ. 전자문서규정을 통해 살펴본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방식

#### 1.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우리 상법은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4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상법 제663조). 이에 비해 프랑스는 이미 1930년 보험계약법에서부터 강행규정인 조항과 임의규정인 조항을 명확히 적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러한 입법기술은 현행 보험법전에도 이어진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이와 맞물려 임의규정이 증설되었다.

프랑스 보험계약법(보험법전 제1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고, 21개 조문만 임의규정이다. 보험법 제111-2조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조에서는 프랑스 보험법전 제1권(보험계약법) 제1편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권 제111-2조에서는 이 법의 제1편(손해보험과 인보험

에 공통된 규칙), 제2편(손해보험에 관한 규칙), 제3편(인보험과 적립보험에 관한 규칙), 제4편(단체보험)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밝히면서, 임의규정인 21개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열거된 임의규정은 제111-10조, 제112-1조, 제112-5조, 제112-6조, 제113-10조, 제121-5조, 제121-6조, 제121-7조, 제121-8조, 제121-12조, 제121-14조, 제122-1조, 제122-2조, 제122-6조, 제124-1조, 제124-2조, 제127-6조, 제132-1조, 제132-10조, 제132-15조, 제132-19조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제111-10조를 신설하면서도 제111-2조를 동시에 개정하여 제111-10조가 임의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2017년 오르도낭스(Ordonnance n°2017-1433 du 4 octobre 2017 - art. 1 - NOR: ECOT1719130R)<sup>7)</sup>에 의해 보험법전에 제111-9조 내지 제111-12조가 신설되었다. 그 중에서 제111-10조만이 임의규정이고 나머지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정해졌다.

## 2. 전자문서의 도입

2017년 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법전 제111-10조는 “보험자가 제111-9조에서 정하는 수단(전자문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러한 수단(전자문서)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는 종이로 된 문서를 무료로 사용할 권리도 부여되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처럼 전자문서 이용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568면에서는 “Ordonnance”를 “법률명령”으로 번역하고, 법률명령이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법률명령제도는 프랑스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헌법, 의회,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법을 소개하는 국내의 민사법 문헌에서는 “Ordonnance”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오르도낭스”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용례에 따라 “Ordonnance”를 “오르도낭스”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제111-10조

I. -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d'un contrat d'assurance de groupe qui souhaite fournir ou mettre à disposition des informations ou des documents à un assuré sur un support durable autre que le papier, vérifie au préalable que ce mode de communication est adapté à la situation de celui-ci ; il s'assure qu'il est en mesure de prendre connaissance de ces informations et documents sur le support durable envisagé. Lorsque l'assuré fournit à cette fin une adresse électronique, celle-ci est vérifiée par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Après ces vérifications,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informe l'assuré de façon claire, précise et compréhensible de la poursuite de la relation commerciale sur un support durable autre que le papier.

Il renouvelle ces vérifications annuellement. Sauf lorsqu'il est indiqué dans le contrat conclu que le service fourni est de nature exclusivement électronique,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doit informer l'assuré du droit de celui-ci de s'opposer à l'utilisation de ce support dès l'entrée en relation ou à n'importe quel moment ; il est tenu de justifier à tout moment de la relation que cette information a bien été portée à la connaissance de l'assuré.

II. - Sauf u'il est indiqué dans le contrat conclu que le service fourni est de nature exclusivement électronique, l'assuré peut, à tout moment et par tout moyen, demander qu'un support papier soit utilisé sans frais pour la poursuite de la relation commerciale.

Il peut par ailleurs effectuer, dans les mêmes

① 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단체보험의 보험자가 **중이 이외의 지속성 있는 매체**를 통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매체를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 정보와 문서를 구체화된(이미지화된) 지속성 있는 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위의 목적으로 전자 메일주소를 제공한 경우, 보험자,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가 그것을 검증한다.

이러한 검증을 마친 후, 보험자, 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며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중이 이외의 지속성 있는 매체를 통해 상사관계의 지속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은 매년 갱신된다.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전자적 방식으로만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매체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계약체결시 또는 그 외의 시기(보험계약기간 중이면 언제든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피보험자가 자연히 알게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러하다(정당화된다).

<p>conditions, l'ensemble des formalités et obligations qui lui incombent sur tout support durable convenu avec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p>	<p>② 그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전자적 매체로만 제공한다고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상사관계의 계속을 위해, 시기와 방식의 제약 없이, 무상으로, <b>종이로 된 매체를 이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b>                  보험자, 보험중개인 및 보험계약자가 합의한 지속성 있는 매체로 이루어진 모든 절차와 의무는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p>
---------------------------------------------------------------------------------------------------------------------------------------------------------------------	---------------------------------------------------------------------------------------------------------------------------------------------------------------------------------------------------------------------------------------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보험계약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동조항에서 정하는 보험자의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3. 우리법제

전자문서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보험법규의 강행규정성 및 임의규정성에 대한 우리법의 태도를 살펴본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상법 제663조 본문). 이 조문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유효성 심사 근거 내지는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sup>8)</sup> 상법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편면적 강행규정인 이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상법 보험편의 각 규정은 경우에 따라 강행규정이 되기도 하고 임의규정이 되기도 한다. 즉, 당사자가 정한 계약조항이 상법 보험편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 불리하면 그 계약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sup>9)</sup> 다만 해당 계약조항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sup>10)</sup> 이와 달리 계약

8) 곽평석, “보험약관의 유효성 심사기준으로서 상법 제663조”, 『비교사법』 제4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44면 등 다수의 문헌.

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조항이 상법 보험편 규정에 비해 보험계약자 등에 유리하면 그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그 계약조항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렇듯 상법 보험편은 상황에 따라 강행규정인지가 결정되는 상대적 강행규정이라는 성격을 띤다.<sup>11)</sup>

그런데 상법 제663조는 규정의 형식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sup>12)</sup>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의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상법 보험편이 규정하는 사항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sup>13)</sup> 규정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서 동조에서 정하는 ‘불이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상법 보험편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약관 및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4. 시사점

규정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서 우리 상법 제663조는 개별 약관 및 특약의 효력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드러난 예로서, 태아보험계약상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적격이 문제된 사안을 들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상법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실시하고, 이어서 ‘개별 약정이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sup>14)</sup> 그러나 상법 제663조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상법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15)</sup> 상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에 관해서도 당사자 간의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상법 제663조를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혼란은 상법 제663조의 추상성과 포괄성

10)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11)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63-64면.

12) 심상무, “상법 제663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386면 등 다수의 문헌.

13) 위의 논문, 385면.

1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15) 임수민,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 「보험법연구」, 제14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267면.

에 일부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향후 제663조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 규정과 달리 프랑스 보험법과 일본 보험법 등 주요 입법례에서는 보험법전의 각 개별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명시한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은 편면적 규정이라는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상법 보험편 전체 조문에 적용되도록 하는 우리 상법의 입법방식에 비해서 명확하며, 당해 계약조항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분쟁 소지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 IV. 전자적 수단 도입 방식

### 1. 선별적 도입

2017년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종이문서에 갈음하여 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문서 등 전자적 수단을 허용하였으나, 모든 경우에 전자적 방식을 허용한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해지권에 관한 2017년 개정된 동법 제113-12조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연례해지권의 행사방법으로 종래 인정되어 온 등기우편 이외에 전자우편을 인정하였지만,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 방식으로는 여전히 등기우편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보험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등기우편’을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명확성 확보

보험법 제111-9조에서는 허용하고자 하는 수단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동조는 ‘support durable’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속성 있는 매체” 또는 “내구성 있는 매체” 으로 번역될 수 있겠다.

제111-9조	
<p>Constitue un <b>support durable</b>, au sens du présent code, tout instrument offrant la possibilité à l'assuré, à l'assureur, à l'intermédiaire ou au souscripteur d'un contrat d'assurance de groupe de stocker des informations qui lui sont adressées personnellement, afin de pouvoir s'y reporter ultérieurement pendant un laps de temps adapté aux fins auxquelles les informations sont destinées, et qui permet la reproduction à l'identique des informations conservées.</p>	<p>본 법의 “지속성 있는 매체”란,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가능성이 제공된 모든 매체, 이를테면 제공되는 정보를 저장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모든 수단, 정보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기간 동안 나중에 참조할 수 있으며, 보유된 동일한 정보의 재생산이 허용된 것을 의미한다.</p>

보험법 제111-12조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청구 등 보험계약에 관한 서명을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타법에서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등록된 전자우편의 발송으로 등기우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1-12조	
<p>Lorsqu'une signature est exigée, celle-ci peut être apposée par écrit ou par tout autre moyen prévu à l'article 1367 du code civil.</p> <p>L'envoi <b>recommandé électronique</b> est équivalent à l'envoi par lettre recommandée, dès lors qu'il satisfait aux exigences de l'article L. 100 du code des postes et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p>	<p>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자필서명 또는 민법 제1367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다.</p> <p>등록된 전자우편 발송은, 그것이 우편 및 전기통신법 제10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우편 발송과 같은 효력이 있다.</p>

### 3. 형평성 도모

보험법 제111-11조는 보험자 측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제공가능성을 허용하되, 기술적으로 보안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피보험자가 그러한 정보에 실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보험자 측이 그러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측에 미리 알려 주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제111-11조	
<p>Lorsque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d'un contrat d'assurance de groupe met à disposition de l'assuré un espace personnel sécurisé sur internet, il garantit l'accessibilité des informations et documents conservés dans cet espace pendant une durée adaptée à leur finalité. Pour les documents précontractuels et contractuels, cette durée ne peut être inférieure à cinq ans après la fin de la relation contractuelle.</p> <p>Lorsque l'assureur, l'intermédiaire ou le souscripteur envisage de ne plus rendre accessibles ces informations et documents, il doit en informer préalablement, dans un délai qui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eux mois, l'assuré par tout moyen adapté à la situation de ce dernier.</p>	<p>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단체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에게 인터넷상 가상보안 개인공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 목적에 적합한 기간 동안에 공간에 보관된 정보 및 문서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전의 문서와 계약문서에 관해, 그 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정해져야 한다.</p> <p>보험자, 보험중개인 또는 단체보험가입자가 그러한 정보와 서면(서류)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 4. 기타

참고로, 이들 규정은 2017년 오르도낭스(Ordonnance n°2017-1433 du 4 octobre 2017 - art. 1 - NOR: ECOT1719130R)에 의해 신설되었다. 이 오르도낭스는 금융계약에서 서면 이외의 수단을 인정("la dématérialisation")하는 내용의 위임명령이다. 이것에 의해 보험법 (code des assurances),<sup>16)</sup> 민법(code civil),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통화 및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등이 개정되었고, ‘의사소통의 전자적 수단’이라는 용어가 보험법전에 편입되었다. 보험법전에서는 “un support durable autre que le papier(종이 이외의 지속성 있는 매체)”, “recommandé électronique(권장되는 전자적 방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5. 우리법제

### (1) 공인전자서명 있는 전자문서 허용

2017년 상법 개정으로 우리 보험계약법에도 전자문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상법 제731조 제1항과 제735조).<sup>17)</sup>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이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고, 동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서면”이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개정되었다.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고, 제735조의3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단체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조문이다. 사망보험 중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단체생명보험 중에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와 동일인이 아닌 보험에서만 허용된다. 즉,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위와 같은 계약에서 그러한 서면동의의 방식으로 전자문서의 방식을 허용했다.

법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16) 개정된 보험법 조문은 제111-9조 내지 제111-12조, 제111-2조, 제112-2조, 제112-2-1조, 제112-9조, 제113-12조, 제113-12-2조, 제113-14조, 제113-15-1조, 제113-2조, 제114-2조(기존의 등기우편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도 허용), 제121-10조, 제121-11조, 제132-5-1조, 제132-5-2조, 제132-5-3조, 제132-9-2조이다.

17) 법률 제14969호(2017. 10. 31. 일부개정, 2018. 11. 1. 시행).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한다.<sup>18)19)</sup>

이러한 법 개정은 타인의 생명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의 IT기술의 발전 속도에 다소 뒤떨어지는 입법이었다. 본인 인증 방식 및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재검토의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0)</sup>

## (2) 허용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확대

2020년 6월 9일에 전자서명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sup>21)</sup>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법 개정 이유서

- 18)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 서면동의 관련 개정안으로는, 당초 이용주 의원안(의안번호 3580)과 윤상직 의원안(의안번호 4641)이 있었는데, 이 두 안을 통합·조정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안번호 9697)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으로 이어졌다.
- 19) 참고로, 대안반영 폐기된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안의 입법이유서에서는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동의에서 말하는 '서면의 범위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반 소비자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보험계약 체결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의안번호 3580 (2016. 11. 15. 발의) 대안(2009697)반영 폐기(2017. 9. 28)).  
이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를 허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부적·기술적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를 대면하도록 하고 사후에 보험회사가 전화로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절차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당초 전자적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입법이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개정 전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단체생명보험계약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 20) 이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오프라인의 서면(종이)에 의한 서명만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거래비용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전우현, 「2017년 한국금융법학회 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9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보험거래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황현아,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KIRI 리포트」, 제430호(2017. 10. 23), 보험연구원, 9-10면). 한편, 이러한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위·변조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박세민, 「2017년 한국금융법학회 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129면).

를 보면,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은 삭제된다(제2조). 또,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제3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한다(제6조).

개정법 부칙 제7조는 에서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상법 일부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제735조의3의 전자서명이 공인전자서명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sup>22)</sup>

## 6. 시사점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보험계약에서도 공인된 전자서명 뿐 아니라 민간기술업체의 전자서명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프랑스 보험법과 별다른 차이가

21) 전자서명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부개정].

22) 전자서명법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없게 되었다. 미세한 차이점이라면 프랑스 보험법은 우리에게 비해 '지속성 있는 매체'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매체를 포섭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문인증수단이나 홍채인증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프랑스 법의 개념이 이러한 수단을 보다 포섭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문으로 도입하였다. 즉, 보험법 제111-9조는 허용하고자 하는 수단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제111-10조와 같이 그러한 수단의 허용과 함께 보험자에게 그러한 수단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종이로 된 문서를 무료로 사용할 권리를 수여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계약자를 충실히 보호하는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 보험법은 전자적 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각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전자적 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등기우편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두는 등,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이문서 이외의 매체의 이용을 보험계약 시 허용하는 문제에 관한 프랑스 보험법 규정체계는 향후 우리 상법 보험편(보험계약법) 개정 논의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V.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해지권

### 1. 보험해지권의 확대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해지권을 가진다. 보험자는 보험료가 미납되거나(보험법 제113-3조), 계약기간 중 보험 위험이 증가한(보험법 제113-4조)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 금액의 감소를 요구하였음에도 보험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보험법 제113-4조)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도, 2014년 3월 17일 및 2017년 2월 21일자 「Hamon」 법<sup>23)</sup>에 의해 피보험자(비전문적인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sup>24)</sup> 즉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17일에 신설된 보험법 제112-10조는 비전문적 목적의 보험계약(공급자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에 부가되는 계약으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초기 보증을 해 주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였다.<sup>25)</sup> 이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신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014년 3월 17일에 신설된 보험법 제113-12-2조<sup>26)</sup>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차용자에게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이 보험을 다른 계약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 단체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아래에서는 「Hamon」 법에 의해 신설 및 개정된 프랑스 보험법 조문 중에서 해지권에 관한 조문을 검토한다.

## 2. 연례 해지권

### (1) 신설

2014년 3월 17일자 법(No. 2014-344)<sup>27)</sup>은 피보험자에게 비전문적인 목적으로 계약한 피보험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보험법 제113-15-2조).<sup>28)</sup> 이것은 ‘최초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필자는

23) 이 법(Hamon Loi)은 2014년 3월 17일에 제정된 프랑스의 소비자 보호법으로서, 소비자가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전문적 역량을 가지지 않은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특히 보험계약해지권을 단순화했다. 예컨대,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프랑스법상 가계보험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었다.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그러한 의사를 계약갱신일 2달 전에 보험회사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계보험 소비자는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이 해지권을 행사하면 30일 이후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24) Maud ASSELAIN, *Synthèse - Contrat d'assurance*, 10 Juillet 2018, p.36.

25) *Id.*

26) 이 조문은 2014년 신설되었고 2017년 개정되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등기우편 외에 등록된 전자우편이 허용되었을 뿐이므로, 2014년 입법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7) LOI n° 2014-344 du 17 mars 2014 - art. 61 (V).

28) *supra* note 24, p.34.

이러한 내용의 해지권을 ‘연례 해지권’이라고 번역해보았다.

이 규정(보험법 제113-15-2조)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에 관한 보험법 제1권 제3장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문에 의하면, 비전문적 목적의 자연인(보험소비자)을 보장하고 국사원의 심의를 거친 정부명령에서 규정하는 분야의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최초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용이나 벌칙(위약금)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계약 및 보험계약가입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해지권 행사 방식으로 서신(lettre) 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성 있는 매체(tout autre support durable)도 허용된다. 해지의 효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해지의사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 이러한 해지권을 보험계약 시에 기재해야 하고,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료나 공제료 지급기일 통지 시에 알려주어야(환기(rappelé)시켜주어야) 한다.

제113-15-2조	
<p>① Pour les contrats d'assurance couvrant les personnes physiques en dehors de l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et relevant des branches défini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assuré peut,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à compter de la première souscription, résilier sans frais ni pénalités les contrats et adhésions tacitement reconductibles. La résiliation prend effet un mois après que l'assureur en a reçu notification par l'assuré, par lettre ou tout autre support durable.</p> <p>② Le droit de résiliation prévu au premier alinéa est mentionné dans chaque contrat d'assurance. Il est en outre rappelé avec chaque avis d'échéance de prime ou de cotisation.</p>	<p>① 비전문적 목적의 자연인을 보장하고 국사원<sup>29)</sup>의 심의를 거친 정부명령에서 규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는 첫 번째 보험가입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비용이나 벌칙(위약금)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신이나 기타의 모든 지속성 있는 매체에 의한(해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해지권은 각 보험계약서에 기재된다. 이 해지권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각 지급기일 통지시에 환기되어야 한다.</p>

<p>③ Lorsque le contrat est résili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l'assuré n'est tenu qu'au paiement de la partie de prime ou de cotisation correspondant à la période pendant laquelle le risque est couvert, cette période étant calculée jusqu'à la date d'effet de la résiliation. L'assureur est tenu de rembourser le solde à l'assuré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résiliation. A défaut de remboursement dans ce délai, les sommes dues à l'assuré produisent de plein droit intérêts au taux légal.</p>	<p>③ 계약이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로 해지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험담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부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기간은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계산한다. 보험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잔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는 자동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다. (④항 이하는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번역 생략.)</p>
------------------------------------------------------------------------------------------------------------------------------------------------------------------------------------------------------------------------------------------------------------------------------------------------------------------------------------------------------------------------------------------------------------------------------------------------------------------------------------------------------------------------------------------------------------	-------------------------------------------------------------------------------------------------------------------------------------------------------------------------------------------------------------------------------------------------------------------

(2) 적용범위의 확대

2017년에 보험계약의 기간과 해지에 관한 규정인 보험법 제113-12조를 개정하여, 연례 해지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뿐 아니라, 갱신 전 보험계약 일반에 대해서도 연례 해지권을 인정하였다(제113-12조). “particulièrement le droit pour l'assureur et l'assuré de résilier le contrat tous les ans(특히 해마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 “résiliation annuelle(연례 해지권)” 등의 문구가 삽입되었다.<sup>30)</sup>

29) 국사원은 참사원이라고도 하며,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이며, 행정에 있어서 의무적·임의적 자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다.

30) 동조의 개정 근거인 오르도낭스 제2017-1433호(Ordonnance n° 2017-1433 du 4 octobre 2017)에서는 제113-12조의 처음 두 단락을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고 정했다. « La durée du contrat et les conditions de résiliation, particulièrement le droit pour l'assureur et l'assuré de résilier le contrat tous les ans, sont fixées par la police. Toutefois, l'assuré a le droit de résilier le contr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en adressant une lettre recommandée ou un envoi recommandé électronique à l'assureur au moins deux mois avant la date d'échéance de ce contrat.

Lorsque l'assuré a souscrit un contrat à des fins professionnelles, l'assureur a aussi le droit de résilier le contrat dans les mêmes conditions.

Dans les autres cas, l'assureur peut résilier le contr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à la condition d'envoyer une lettre recommandée à l'assuré au moins deux mois avant la date d'échéance du

또, 종래 계약해지의 방식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등록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sup>31)</sup> 우편 소인에 표시된 날 뿐 아니라 등록된 전자우편의 발송일도 해지기간의 기산일로 인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 (볼드체 표기)
<p>La durée du contrat et les conditions de résiliation, <b>particulièrement le droit pour l'assureur et l'assuré de résilier le contrat tous les ans(특히 매년(해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b>, sont fixées par la police.</p> <p>Toutefois, l'assuré a le droit de résilier le contr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en adressant une lettre recommandée ou un envoi recommandé électronique(<b>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의 발송으로</b>) à l'assureur au moins deux mois avant la date d'échéance de ce contrat.</p> <p>Lorsque l'assuré a souscrit un contrat à des fins professionnelles(<b>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b>), l'assureur a aussi le droit de résilier le contrat dans les mêmes conditions.</p> <p>Dans les autres cas, l'assureur peut résilier le contrat à l'expiration d'un délai d'un an, à la condition d'envoyer une lettre recommandée à l'assuré au moins deux mois avant la date d'échéance du contrat(<b>다른 경우, 보험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등기우편을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b>).</p> <p>Il peut être dérogé à ces règles de résiliation annuelle(<b>연례 해지권</b>) pour les contrats individuels d'assurance maladie et pour la couverture des risques autres que ceux des particuliers.</p> <p><u>연례해지권은 각 보험증권에서 환기되어야 한다(삭제됨).</u></p> <p>Le délai de résiliation court à partir de la date figurant sur le cachet de la poste ou de la date d'expédition de l'envoi recommandé électronique(<b>또는 등록된 전자우편의 발송일로부터</b>).</p> <p>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assurances sur la vie.</p>

contrat.

Il peut être dérogé à ces règles de résiliation annuelle pour les contrats individuels d'assurance maladie et pour la couverture des risques autres que ceux des particuliers.

Le délai de résiliation court à partir de la date figurant sur le cachet de la poste ou de la date d'expédition de l'envoi recommandé électron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8C8AEC8066A328A309FE2B1F19DC2D3F.tplgfr38s\\_3?cidTexte=JORFTEXT000035720869&idArticle=LEGIARTI000035721922&dateTexte=20171006](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8C8AEC8066A328A309FE2B1F19DC2D3F.tplgfr38s_3?cidTexte=JORFTEXT000035720869&idArticle=LEGIARTI000035721922&dateTexte=20171006)>.

이에, 본고에서는 대체된 부분과 개정 전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1) '등록된 전자우편'이란 우리나라 전자문서법상의 공인전자주소에 해당하는 프랑스 공인전자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보험법전(개정된 보험법전) 제113-12조**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특히 매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증권으로 정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할 때 기간만료일의 2개월 전에 보험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등록된 전자우편 발송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전문적인 목적<sup>32)</sup>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자도 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해지권을 가진다. 다른 경우, 보험자는 계약기간종료일의 2개월 전에 등기우편을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1년의 기간 만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인 질병보험계약과 개인위험 이외의 위험의 담보에 대해서는 연례해지권에 관한 이 규정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해지기간은 우편소인에 표시된 날 또는 등록된 전자우편 발송일 부터 기산한다. 본 조는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중복보험 해지권**

(1) 2014년 신설 (제112-10조)

1) 부가보험에 대한 중복보험 해지권

「Hamon」 법 (2014년 3월 17일자 법률 제2014-344호)에 의해 신설된 보험법 제112-10조는 중복보험계약<sup>33)</sup>이 체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동 규정상의 중복보험 해지권은 모든 종류의 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고, 부가보험(“d’assurance affinitaires”)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부가보험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에 부가해서 제공되는 보장계약(보장상품)을 의미한다. 예컨대 휴대전화, 여행, 전자제품 등의 지불수단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sup>34)35)</sup> 보험법전 제112-10조에서는 부가보험을 “공급자가 매도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보충으로서 비전문적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l’assuré qui souscrit à

32) “전문적인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컨대 제113-12-2조와 같이 재화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공급계약상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계약과 함께 체결한 보험계약(비전문적인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전통적인 보험계약처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33) 중복보험이란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된 수개의 동일한 보험계약을 말함. 동일한 보험계약이란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보험기간 등이 중복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한기정, 앞의 책, 478면).

34) *Code des assurances*, LexisNexis, 2018, p.79.

35)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을 부가보험(add-on insurance)이라 하며, 우리나라의 단중보험은 부가보험의 일종이다(송윤아/권오경,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KiRi Weekly』 (2017. 5. 15.), 보험연구원, 2면).

des fins non professionnelles un contrat d'assurance constituant un complément d'un bien ou d'un service vendu par un fournisseu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험법 제112-10조에 의하면 보험법 제113-15-2조에 규정된 연례 해지권 행사 기간(최초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라고 할지라도, 당해 보험이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 해지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규정했기 때문에, 부가보험을 구입한 보험소비자의 중복보험 해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 되지는 않는다.<sup>36)</sup>

제112-10조	
<p>L'assuré qui souscrit à des fins <b>non professionnelles</b> un contrat d'assurance constituant un complément d'un bien ou d'un service vendu par un fournisseur, s'il justifie d'une garantie antérieure pour l'un des risques couverts par ce nouveau contrat, peut <b>renoncer</b> à ce nouveau contrat, sans frais ni pénalités, tant qu'il n'a pas été intégralement exécuté ou que l'assuré n'a fait intervenir aucune garantie, et dans la limite d'un délai de quatorze jours calendaires à compter de la conclusion du nouveau contrat.</p> <p>Avant la conclusion d'un contrat d'assurance, l'assureur remet à l'assuré un document l'invitant à vérifier s'il n'est pas déjà bénéficiaire d'une garantie couvrant l'un des risques couverts par le nouveau contrat et l'informant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Un arrêté du ministre chargé des assurances fixe le contenu et le format de ce document d'information.</p>	<p>① 공급자가 매도한 물건 또는 서비스에 <b>부가</b>하여 보험 계약을 비전문적 목적으로(à des fins <b>non professionnelles</b>) 체결한 피보험자는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위험들 중 하나를 위하여 이미 체결한 보장(선행보험)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 새로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가 어떤 보장(보험금 지급사유)도 발생하게 하지 않은 한,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부터 14일 내에 아무런 비용이나 벌칙의 적용 없이 이 새로운 계약을 해지(포기, renoncer)할 수 있다.</p> <p>②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미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험들 중의 하나를 담보하는 보장의 수익자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고 전항에 기재된 해지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을 피보험자에게</p>

36) Code des Assurances-Code de la Mutualité-, 24 ed., Dalloz, 2018, p.70.

<p>Lorsque l'assuré a exercé sa faculté de renonciation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emier alinéa, l'assureur est tenu de rembourser, le cas échéant, le montant de la prime payée par l'assuré dans un délai de trente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xercice du droit de renonciation. Toutefois, l'intégralité de la prime reste due à l'assureur si le souscripteur exerce son droit de renonciation alors qu'un sinistre mettant en jeu la garantie du contrat est intervenu durant le délai de renonciation prévu au premier alinéa.</p> <p>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aux contrats d'assurance qui couvrent :</p> <p>1° Soit le risque de mauvais fonctionnement, de perte, y compris de vol, ou d'endommagement des biens fournis ;</p> <p>2° Soit l'endommagement ou la perte, y compris le vol, de bagages et les autres risques liés à un voyage, même si l'assurance couvre la vie ou la responsabilité civile, à la condition que cette couverture soit accessoire à la couverture principale relative aux risques liés à ce voyage ;</p>	<p>교부한다. 보험 담당 장관의 부령(arrêté)으로 이 안내서면(document d'information)의 내용과 형식을 정한다.</p> <p>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보험자는 해지권 행사일로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금액을 경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보장을 발생시키는 사고가 제1항에 규정된 해지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가입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자에게 귀속한다.</p> <p>④ 본조는 다음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p> <p>제1호 제공된 물건의 작동불량 위험, 제공된 물건의 유실(도난 포함) 위험, 제공된 물건의 손상 위험</p> <p>제2호 수하물의 유실(손상, 도난 포함) 위험 및 보험이 생명이나 민사책임을 담보하더라도, 이 담보가 당해 여행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주된 담보의무에 대해 부수적인 것인 경우, 여행과 관련된 다른 위험</p>
--------------------------------------------------------------------------------------------------------------------------------------------------------------------------------------------------------------------------------------------------------------------------------------------------------------------------------------------------------------------------------------------------------------------------------------------------------------------------------------------------------------------------------------------------------------------------------------------------------------------------------------------------------------------------------------------------------------------------------------------------------------------------------------------------------------------------------------------------------------------------------------------------------------------------------------------------------------------------------------------------------------------------------------------------------------	-----------------------------------------------------------------------------------------------------------------------------------------------------------------------------------------------------------------------------------------------------------------------------------------------------------------------------------------------------------------------------------------------------------------------------------------------------------------------------------------------------------------

## 2) 행사 방식

입법자는 동 조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비전문적 목적의 보험상품을 구매한 보험소비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

보험 상품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 중 하나를 담보하는 보험보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새로운 보험계약이 예전에 체결한 보험계약과 겹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112-10조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보호는 다소 환상으로 보일 수 있다.<sup>37)</sup>

### 3) 정보제공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입법자는 해지권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정보제공의무 (obligation d'information à l'assureur)를 부과하였다.<sup>38)</sup> 즉, 보험회사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는 대신에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sup>39)</sup>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그것이 계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서면(서류)”을 교부해야 한다(법 제112-10조). 그 서면은 부령 제112-1조에서 말하는 부록에서 정하는 모델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서면의 내용은 제 112-2조에서 말하는 정보 시트 박스에 현저히 두드러지게 표시되어야 한다(부령 제112-1조).<sup>40)</sup>

### 4) 해지권의 한계

입법자는 이 해지권에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 그 제한 중의 하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제한은 “보험계약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sup>41)</sup>

첫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해지권 제한을 살펴본다. 동조의 해지권은 그 보험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는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동조의 해지권 규정은 원격보험계약(격지자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 즉 “d'un contrat conclu à distance”)의 해지와 관련해서는 보험법 제 112-2-1조 제2항에 따라 이행된 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정의하지 않은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동 법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파기원은

37) *Id.*

38) *Id.*

39) *Id.*

40) 보험법전 제112-10조상에서 말하는 부령 제112-1조는 2014년 12월 29일자 (보험 담당 장관의) 명령에 의해 채택되었고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41) *supra* note 36, p.71.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 조 해지권의 이행위험은 때때로 불확실할 수 있다.<sup>42)</sup>

둘째, 보험계약이 보장(담보)하는 위험과 관련된 해지권 제한을 살펴본다. 이 해지권은 ① 제공된 물건의 작동불량 위험, 제공된 물건의 유실(도난 포함) 위험, 제공된 물건의 손상 위험, ② 수하물의 유실(손상, 도난 포함) 위험 및 보험이 생명이나 민사책임을 담보하더라도, 이 담보가 당해 여행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주된 담보의무에 대해 부수적인 것인 경우, 여행과 관련된 다른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이 두 가지 위험 이외의 위험에 대해서는 동 조항상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불 수단(les moyens de paiement) 관련 위험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포함되지 아니하였다.<sup>43)</sup>

## (2) 2016년 개정 (제112-10조 제4항 제3호 신설)

2014년에 도입된 보험법 제112-10조는 2016년 12월 9일자 법률(제2016-1691호)<sup>44)</sup>에 의해 개정되었다. 2016년 개정으로 인해 동조 제4항 제3호가 신설되었다.

제112-10조 제4항 제3호 신설	
3° Soit la perte, y compris le vol, de moyens de paiement, ainsi que de tout autre bien inclus dans une offre portant sur les moyens de paiement.	제3호 도난을 포함하여, 변제수단(지급수단) 및 변제수단(지급수단)을 목적으로 제공된 다른 모든 물건의 멸실

2014년 법 개정시에도, 도난 및 멸실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계약에서도 동조의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포함되지 못했다. 이것이 2016년에 비로소 포함된 것이다.<sup>45)</sup>

해지권 행사기간(14일)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2016년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동조의 해지권은

42) *Id.*

43) *supra* note 34, p.79.

44) LOI n°2016-1691 du 9 décembre 2016 - art. 83 - NOR: ECFM1605542L.

45) *supra* note 34, p.79.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지만, “관료주의”와 같은 “제한적인 관행(조건)” 때문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sup>46)</sup> 특히,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중복을 입증할 것을 해지권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sup>47)</sup>

### (3) 우리법제

우리나라에서도 재화의 구입 시에 부가보험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핸드폰 도난 및 파손보험이 그 예이다. 서비스 제공시에 일정한 보장을 해 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했던 채무면제·채무면제상품은 그 보험성에 대한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부가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상품이다. 부가보험의 판매를 통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는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부가수익 창출과 신규모집통로 개척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부가보험을 구입하는 경우에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상법(제4편 보험)과 보험업법은 부가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은 중복보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중복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각자 보상책임을 이행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손해보험에 요구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sup>48)</sup> 상법은 이득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협의의 중복보험’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한다(상법 제672조). 결국 보험소비자는 중복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46) Jean Bigot, “La loi Hamon et le contrat d’assurance”, *Semaine juridique*, No.21~22, 2014, pp.1071-1077.

47) *supra* note 34, p.79.

48) 한기정, 앞의 책, 477면.

그러나 보험소비자(보험계약자)는 중복보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 사실은 알지만 보상의 한도가 보험계약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sup>49)</sup> 사기 없이 체결되는 중복보험 건수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중복보험에 대해 상법은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조문은 두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4) 소결

프랑스 보험법은 부가보험에 한정해서이기는 하지만, 연례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중복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가보험 체결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일정한 시점에 프랑스와 같은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보험은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인 재화·용역 판매계약의 마무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 부가보험을 구매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 채무면제·채무면제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와 영국의 지불보장보험(PPI) 불완전 판매 사례가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부가보험에 한정해서라도 보험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직하다. 또, 부가보험 뿐 아니라 보험 상품 전반에 걸쳐서, 사기 없이 체결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보험해지권을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9) 上同.

## VI. 장기기증자 차별금지

### 1. 차별금지조항 도입

제111-8조	
Toute discrimination directe ou indirecte fondée sur la prise en compte d'un don d'organes comme facteur de refus de contrat d'assurance ou dans le calcul des primes et des prestations du donneur ayant pour effet des différences en matière de primes et de prestations est interdite.	장기기증을 보험계약 거부의 요인으로 하거나 장기기증자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에 관하여 차별을 초래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은 금지된다.

이 조문은 2011년 7월 7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제2011-814호) 제12조에 의해 신설되었다. 이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은 장기 기증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입법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를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일반 법으로서 형법에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그 외의 제반 법률에도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형법 제225-3조는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1231-1 조에 정의된 장기 제거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과를 고려한” 모든 차별에 대해 형사 처벌 한다고 규정했다. 프랑스 입법자는 이 아이디어를 확대하여 보험법 제111-8조를 신설했다. 즉,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산정시 장기기증자를 비장기기증자와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부보위험을 평가할 때 장기 기증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없게 되었다.

보험제도의 본질상 보험자는 보험청약자의 건강 상태 등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만약 위 조문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과거에 장기기증을 한 사람이 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장기기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것이다. 장기기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기능을 약화시키고 질병 발생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

을 것이다(보험법 제113-4조). 때문에 장래에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자는 장기기증을 꺼리게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장기 기증 부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정책을 고려한 제한적 입법일 뿐, 사적 영역에서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인보험계약 전반에서 피보험자의 건강 위험의 인수(underwriting)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11-8조의 신설로 인해,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한 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기증은 위험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는 보험법 제113-2조상의 위험증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피보험자는 장기기증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장기기증으로 인한 보험료의 상승이나 보험계약해지를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2. 차별금지범위 확대

2016년에는 보험법 제111-8조에 “세포 또는 생식세포의 (, de cellules ou de gamètes)”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6년 프랑스 보건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보험법도 개정되었다.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LOI n° 2016-41 du 26 janvier 2016 de modernisation de notre système de santé (1))에 의해 공공보건법, 사회보장법, 관세법, 세법 등과 같이 보험법도 개정되었다. 불임의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 뿐 아니라 세포나 생식세포의 기증도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법 조문도 개정한 것이다.

제111-8조	
<p>Toute discrimination directe ou indirecte fondée sur la prise en compte d'un don d'organes, de cellules ou de gamètes comme facteur de refus de contrat d'assurance ou dans le calcul des primes et des prestations du donneur ayant pour effet des différences en matière de primes et de prestations est interdite.</p>	<p>장기, 세포, 또는 생식세포의 기증을 보험계약 거부의 요인으로 하거나 장기기증자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에 관하여 차별을 초래하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은 금지된다.</p>

### 3. 우리법의 태도

우리의 현행 상법과 보험업법은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에 관해 규정하지 않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고 한다)에서 누구든지 장기등<sup>50)</sup>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장기이식법 제3조 제2항). 이 규정은 대사인적 효력(對私人的效力)을 가지는 규정으로 이해되므로, 보험회사가 장기등의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 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3조 제3항), 보험회사가 장기등의 기증자<sup>51)</sup>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의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정 주체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만으로는 보험회사에게 행위지침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만 금지되는지, 보험요율에 차등을 두는 것도 금지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보험요율을 상향하는 것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2009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계약심사 담당임을 소집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해 보험가입시 차별이 없도록 독려하고,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장기기증자에 대해 비합리적인 인수기준<sup>52)</sup>을 적용하여 관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기준

5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2) 예컨대 통상 골수기증자는 1개월이 경과하면 골수가 회복되고 의학적으로 후유증 여부가 판별되는데, 기증 후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과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시정요구 및 해당회사의 중점검사사항에 반영한다.<sup>53)</sup>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기기증자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sup>54)</sup> 손해보험협회는 신고 결과를 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 4. 소결

지금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협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지속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의 장기기증자 차별금지 규정이 그러한 감독의 법적 근거 및 보험가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충분한가? 장기이식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동법 제 3조 제2항의 장기기증자 차별금지 규정만으로 보험가입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도 장기기증서약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보다 명확한 행위지침과 구제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본다. 장기이식법에 있는 선언적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 가능성과 보험요율에 대한 사항을 보험업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5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2009. 5. 20.)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3584](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3584)>.

54) <<https://www.knia.or.kr/report/report-discriminate/>> 참조.

## Ⅶ. 결 론

우리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이 개괄적인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험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보험법 조항을 위반하였는지가 법적 분쟁이 된 경우에 해당 법조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그러나 프랑스 보험법은 법전에서 해당 법조항의 강행규정성과 임의규정성을 일일이 열거하여 밝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분리시키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프랑스 보험법의 입법기술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해본다면 좋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개정 사항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가 최근 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측의 해지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종래 보험계약자에게 인정해 온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해지권 이외에도, 목시적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연례 해지권과 비전문적 목적의 보험상품에 대한 중복보험 해지권 등을 인정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보험계약해지권은, 첫째,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인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권(상법 제649조),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의 보험계약 해지권(상법 제654조) 등이 있다. 둘째,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지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상법 제650조),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상법 제651조), 위험의 변경증가로 인한 보험계약해지권(상법 제652조, 제653조) 등이 있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 해지권과 같이 다소 일반적인 해지권 규정을 두는 외에, 프랑스 보험법전 제 113-15-2조의 목시적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연례 해지권이나 제112-10조의 비전문적 목적의 보험계약에 대한 중복보험 해지권과 같은 구체적인 해지권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에 비해, '보험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측면과 보험계약당사자를 형평성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중복보험의 경우, 우리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수 보험자 간의 연대·비례책임을 규정하고 각 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프랑스 보험법전의 중복되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중복보험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자 측을 배려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 우리 상법상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이미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지 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즉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상법 제649조 제3항), 그 외의 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5)</sup>

반면, 프랑스 보험법전에서는 연례 해지권, 중복보험 해지권 등 각각의 해지권이 행사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기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자가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지권이 행사된 양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6)</sup> 보험계약 해지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험자와 대등하게 보호하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향후 우리 보험법 개정 논의 시에 프랑스 보험법의 해지권 규정과 법 개정 과정을 검토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기증자 보험가입에 관해서는, 우리 보험계약법은 침묵하지만 프랑스 보험법은 보험가입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심신 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으로 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으로

55) 이에 관해 상법 제649조 제3항의 반대해석과 보험료불가분 원칙을 근거로 보험자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견해와, 임의해지의 경우에만 보험료를 반환하고 기타 해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649조 제3항을 반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운용실무를 고려할 때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은 이론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점을 들어 기타 해지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6) 예컨대, 프랑스 보험법전 제112-10조에서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반환의무를 인정하지만, 보험사고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해지 기간 중에 발생했는데도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때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귀속시키도록 명문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상법 제732조)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인보험 중 생명보험, 그 중에서도 사망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주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보험법상 장애인, 심신박약자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며,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논의에 중심이 있고 보험료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적정한 보험료 산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보험법은 향후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프랑스 보험법에 대한 시론적 연구로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발전된 연구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정진세/김성태(역), 「프랑스 보험계약법」, 법무부, 2016.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한기정,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8.

고평석, 보험약관의 유효성 심사기준으로서 상법 제663조 「비교사법」 제4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송윤아/권오경,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KiRI Weekly」 (2017. 5. 15.), 보험연구원.

심상무, 상법 제663조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1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박세민, 「2017년 한국금융법학회 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임수민,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 「보험법연구」 제14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전우현, 「2017년 한국금융법학회 특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황현아, “상법 보험편 주요 개정 논의”, 「KIRI 리포트」 제430호(2017. 10. 23), 보험연구원.

### 2. 외국문헌

*Code des assurances*, LexisNexis, 2018.

*Code des Assurances-Code de la Mutualité*-, 24 ed., Dalloz, 2018.

ASSELAIN, Maud, *Synthèse - Contrat d'assurance*, 2018.

Bigot, Jean, “La loi Hamon et le contrat d'assurance”, *Semaine juridique*, No. 21-22, 2014.

Kullmann, J., Colloque, *La protection du cosommateur d'assurance : entre permanence et nouveauté*, Rapport des synthèses, RGDA, 2014.

Holman Fenwick Willan France LLP, “Insurance and reinsurance in France: Overview”, 27, ([www.practicallaw.com/insurance-guide](http://www.practicallaw.com/insurance-guide)), 2017.

<Abstract>

## The Recent Amendment of the French Insurance Code

Lim, Soo Min\*

Recently, major foreign countries are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when revising insurance laws. In line with this trend, it is crucial to properly design and revise the insurance law to strengthen the status of policyholders further and to create an insurance transaction environment that meets the digital age. This study introduced and analyzed recent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first volume(Insurance Contracts Code) in the French Insurance Code to help to improve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Among the significant revisions to the recent French Insurance Code, it is noteworthy that insurance policyholders are provided with the protection against damage due to the use of electronic means, and they could be protected better by using the broader right of termination. Moreover, the organ donors are not discriminated when they need the insurance protection. The organ donor protection provision was revised again to protect cells or germ cell donors. Besides, the Insurance Code itself has the provision that lists provisions that are mandatory or optional. The nature of each provision is determined whenever the law is revised.

France has a long history of operating insurance legislation and is a continental law country with detailed and advanced insurance legislation. I think the study of French Insurance Law will help us revise our insurance law in the future.

Key Words : French Insurance Code, Right of Termination(Cancellation) in Insurance Contracts, Mandatory Provision or Default Provision, Electronic Document, Insurance for Organ Donor

---

\* Adjunct Professor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h.D. in Law.